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355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29.
3. 회부연월일 : 2024. 7.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p><u>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u>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u></p> | <p><u>&lt;삭 제&gt;</u></p> |

| 현행                                                                                                                                                                                                                                                                                                                                                                                                                                                                                                                                                                   | 개정안                       |
|----------------------------------------------------------------------------------------------------------------------------------------------------------------------------------------------------------------------------------------------------------------------------------------------------------------------------------------------------------------------------------------------------------------------------------------------------------------------------------------------------------------------------------------------------------------------|---------------------------|
| <p><u>간 내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u>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u></p> <p><u>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u></p> <p><u>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 <p><u>&lt;삭 제&gt;</u></p> |

현행법<sup>1)</sup>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과금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제도는 1995년 에너지 및 자원 관련 5개 기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함)로 통합<sup>2)</sup>하면서 에특회계 세입재원의 하나로 도입<sup>3)</sup>되었으나, 대통령령(광업법 시행

1) 「광업법」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2) 1995년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광물 개발기금을 통합하여 설치하였고, 1997년 가스안전관리기금을 흡수·통합하였음.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령)에서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간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sup>4)</sup>.

이에 개정안은 도입 이래 징수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광물 수입 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sup>5)</sup>는 기획재정부장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되,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 ③ (생략)

4)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은 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위법령이 부재하고 199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실적이 전무하여 부담금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폐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 폐지 여부는 ① 석유 및 가스 부문 부담금과의 형평성, ② 향후 부담금 부과 가능성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입법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2024년 기준 에특회계 세출예산 중 광물 관련 사업에 약 5,752 억원이 지출<sup>6)</sup>되고 있는데, 에특회계는 석유 및 가스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에특회계 자금의 정책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7)</sup>.

6) [ 에특회계 세출예산 중 광물 관련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 결산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예산 |
|--------------------------|---------|---------|---------|----------|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       | 48,791  | 37,232  | 251,762  |
| 일반광업육성지원                 | 15,260  | 14,997  | 23,372  | 25,709   |
| 해외자원개발조사                 | 1,769   | 1,351   | 1,351   | 3,291    |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 1,199   | 1,079   | 1,039   | 1,052    |
| 폐광대책비                    | 63,304  | 44,848  | 173,397 | 223,589  |
| 탄가안정대책보조                 | -       | -       | 61,289  | 64,291   |
|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2,273   | 2,137   | 2,066   | 2,066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 1,188   | 1,188   | 1,224   | 1,839    |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br>(해외광물자원개발) | -       | -       | -       | 1,654    |
| 계                        | 84,993  | 114,391 | 300,970 | 575,253  |

7) 에특회계는 2022년 이후 세출 예산 대비 법정부담금 등 자체 세입 예산이 부족하여 타 기금으

[ 에특회계 법정부담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결산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예산    |
|-----------|-----------|-----------|-----------|-----------|
| 법정부담금     | 1,623,497 | 1,803,073 | 1,218,059 | 1,894,449 |
| 석유수입부과금   | 1,298,172 | 1,509,245 | 918,366   | 1,560,069 |
| 석유판매부과금   | 186,740   | 151,394   | 168,975   | 186,779   |
| 가스안전관리부담금 | 133,786   | 132,684   | 126,617   | 141,400   |
| 광해방지부담금   | 4,800     | 9,751     | 4,101     | 6,201     |

다음으로, 최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 광물 분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략광종 및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석유·가스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과 비교할 때 광물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이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주요 광물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로부터의 전입 예산 등을 통해 부족한 세입 예산을 보전하고 있음. 특히 2024년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천연가스수입부과금을 1년간 한시로 24,242원/톤에서 16,730원/톤으로 30% 인하할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법정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큰 상황임. 따라서 에특회계는 향후 법정부담금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에특회계 운영의 어려움 및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조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회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2024.8., pp. 70~74)

[ 최근 5년간 석유, 가스, 광물 수입량 및 금액 ]

(금액: US\$억)

| 구분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수입량     | 금액    | 수입량   | 금액    | 수입량   | 금액    | 수입량     | 금액      | 수입량     | 금액    |
| 석유<br>(백만 bbl)      | 1,071.9 | 701.9 | 980.3 | 444.3 | 960.1 | 676.9 | 1,031.3 | 1,053.8 | 1,005.8 | 864.4 |
| 가스<br>(LNG,<br>백만톤) | 40.7    | 205.7 | 40.0  | 157.2 | 45.9  | 254.5 | 46.4    | 500.2   | 44.1    | 360.5 |
| 광물<br>(백만톤)         | 231.5   | 297.2 | 209.8 | 260.1 | 216.0 | 398.4 | 206.9   | 508.3   | 200.5   | 404.9 |
| 주요광물**              | 214.2   | 253.8 | 192.6 | 215.3 | 198.3 | 339.6 | 190.9   | 444.7   | 188.2   | 348.9 |
| 희소금속***             | 1.2     | 0.9   | 1.2   | 0.7   | 1.5   | 1.1   | 1.2     | 1.2     | 0.9     | 1.5   |

\* 출처: (석유·가스) 2023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

(광물) 광업·광산물 통계연보(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주요광물: 6대 전략광물 중 광업·광산물 통계연보에 등재된 광종(동, 아연, 철, 니켈, 유연탄 등 5종)

\*\*\* 희소금속: 몰리브덴 망간, 티타늄, 텅스텐, 주석, 코발트, 지르코늄, 베릴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비소, 탄탈륨, 마나듐, 니오븀, 기타 등

참고로, 제18대 국회에 광물 수입·판매부과금을 폐지하려는 법률안 2건<sup>8)</sup>이 제출되었는데, 국회는 동 부과금은 1995년에 에너지 및 자원 관련 5개 기금을 예특회계로 통합하면서 특별회계 세입재원의 하나로 신설한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존치하였으며,

이후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광물 수입·판매에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의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588호,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2009.1.1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4541호, 정부제출, 2009.4.13.)

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sup>9)</sup>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57 |

---

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842호, 신장용의원 대표발의, 2012.11.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1867호, 이연주의원 대표발의, 2016.8.26.)